



청소년동아리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동아리라 칭한다.

제 2조 (등록) 본 동아리 활동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 주관 하에 이뤄진다.

제 3조 (목적) 본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주체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건전한 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 4조 (분류) 본 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아리를 둘 수 있다.

1. 일반회원 동아리 : 가입신청 동아리로 일반 대관 동아리
2. 정회원 동아리 : 일반회원 동아리 중 전담지도자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동아리

제 5조 (활동) 본 활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1. 인간관계 형성 및 친교활동
2. 분야별 청소년 문화 창조활동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수련관(문화의 집) 각종 청소년활동
5. 그 외 자치활동

제 2장 회 원

제 6조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의 동일한 취미를 가진 2인 이상의 청소년으로
2. 수련관 동아리 가입하여
3. 동아리의 목적과 그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동아리

제 7조 (가입) 수련관 동아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1. 회원은 연중 모집하도록 한다.
 2. 동아리 모집 절차에 응하고자하는 동아리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세부운영사항을 전달한다.
- (신청가입 전원 대상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 시 별도 운영가능하다.)





제 8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정기 활동 및 기타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회무처리의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제명) 회원 중에 본 활동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동아리에 한하여 동아리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운 영

제 10조 (지도자) 동아리 지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지도자 : 동아리 조직과 운영관리 및 활동전반을 총괄하고, 연간활동을 지도한다.
2. 지 도 자 : 청소년 관련학과 및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활동 관련분야 전공자로 각 동아리의 활동을 지도한다.(각 동아리 지도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 11조 (임원) 동아리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각 동아리를 대표하여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에 대신한다.
3. 그 외 동아리 상황에 따라 총무, 서기 등을 둘 수 있다.(각 동아리별 대표자를 임명하여 운영한다.)

제 12조 (모임)

1. 정기모임은 각 동아리별로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동아리별 행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13조 (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정회원 동아리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임원(제 11조)은 운영위원회의 총회를 통해 선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담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3장 기 타

제 14조 (재정) 동아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예산상 정하여진 사업 항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 15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수련관 및 전담지도자의 지도하에 대표단(연합회)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